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6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7월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I

선정 개요

☐ 선정 규모: 15개소(신규·재선정 포함) 내외

☐ 신청 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

☐ 선정 절차

- 2026. 8. 3. ~ 2026. 8. 31. 우수사업주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3개)
- 2026. 9월 현지 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2026. 10월 우수사업주 선정 및 공고

II

신청 방법 및 선정 공고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8. 3.(월) ~ 2026. 8. 31.(월)
- 접수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3개)
- 접수방법: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
 -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붙임 1]
②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	임금대장 등
③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4. 1. 1. ~ 2025. 12. 31. (최근 2개년)	[붙임 2]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⑤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자가진단 결과 증빙자료 각 1부	[붙임 4]

☐ 선정 공고

- 공고일자: 2026. 10월 중
-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에 선정 명단 및 우대조치 등 일괄 공고
- 인증유효기간: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III

선정 기준

☐ 심사 기준 및 배점

- 계량평가(7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고용률	20
2	중증·여성 장애인 비율	20
3	장애인고용인원 증가율	10
4	장애인고용 인원 수	10
5	장애친화도	10
합계		70

○ 정성평가(3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모집 및 채용관련 우대조치 - 새로운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 모집관련 우대조치(장애인 구분모집, 특별채용 등) - 채용관련 우대조치(장애인 가산점, 이동편의 제공, 시험시간 조정 등)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 - 기타 ESG기반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	10
2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급여 및 복리후생,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수준 - 배치전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안정 노력 - 장애인 고충처리 제도 운영 -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년수 - 기타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10
3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받은 사업주 우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직장적응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실시 - 편의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 직장 내 재난안전 교육 및 대책 노력	10
합계		30

□ 심사 대상 구분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상시근로자 수는 2025년 12월말 기준

□ 선정 규모 관련

- ▶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모범사업주 발굴,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함)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은 선정규모의 총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의 우수사업주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선정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정에서 제외

■ 선정 제외 대상

- 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 ②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 ③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④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⑤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또는 우수사업주 신청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 ⑥ 최근 3년간 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⑦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⑨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⑩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등

□ 선정 대상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 ① 신청서 등 선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 ②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④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⑤ 인증기간동안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우대조치 시행

-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가점(0.5점) 부여
-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우대
-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주)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주)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주)(0.1%), 수협은행(0.2%), 중소기업은행(0.5%)

-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3년간 면제

* 다만, 1개 사업장이 고용부의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 사업장(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선정되더라도 감독 면제한도는 최대 5년이며, 면제기간 중이더라도 다수의 신고사건, 청원제기 등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독 면제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0.06~0.15점) 부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드는 시설자금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시 우대
- 장애인 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시 우대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등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및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고하기 바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

[붙임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업종(주된 생산품)			⑥연매출액		
⑦설립년월일			⑧산재보험 가입번호		
⑨사업체 유형		민간기업 [] 공공기관 []		⑩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주 여부	
				예 [] 아니오 []	
⑪기업 규모		1,000인 이상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 300인 미만 []			
⑫표준사업장 여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해당사항 없음 []			
⑬소재지					
⑭사업체 전화번호				⑮사업체 팩스	
⑯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2년)						
기준 시점	⑰상시근로자 수	⑱장애인 수	⑲장애인 고용률	⑳중증장애인 수	㉑여성장애인 수	㉒장애인 월평균 임금
년 12월 (신청 직전년)	명	()명	%	명	명	원
년 12월 (신청 2년전)	명	()명	%	명	명	원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고용현황(최근 2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등) 2. 주요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③란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⑪란의 기업 규모는 신청 공고 직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⑰, ⑱란은 인원 수를 기입하며, ⑱란 장애인 수의 괄호 안은 중증 2배수 적용 인원을 적습니다.
- ⑲란은 중증 2배수 적용 장애인 고용률을 적습니다.
- ⑳, ㉑란은 인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주요 공적조서

구분	기재항목	기재내용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내용 기술)
	모집 관련 우대조치	(내용 기술 : 예, 장애인구분모집, 특별채용 등)
	채용 관련 우대조치	(내용 기술 : 예, 장애인 가산점, 이동편의 제공, 시험시간 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활동보조인 지원 등)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	(내용 기술)
	기타 ESG기반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급여 및 복리후생,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수준	(급여) (복리후생) (고용형태)
	배치전환 승진·전보 등 고용유지안정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고충처리 제도 운영	(고충처리건수, 상담실 설치, 상담요청의 편의성, 처리의 성실성 등)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년수	(평균 근속 유지율) (장기근속 촉진 노력 기술)
	기타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성과)
	직장적응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실시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성과)
	편의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근무환경 개선 노력 기술)
	재난안전 교육 및 대책 노력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재난안전 대책 노력 기술)

※ A4종 형태로 10쪽 이내 작성하되, 공적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82조제2항 제19호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본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해당 부분을 가리고(마스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자격 확인, 심사 및 기재사항 사실 확인
수집 항목	①대표자 성명, 연령, 성별, 직위, ②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③신청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소재지, 사업체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3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의 접수 및 심사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u>고용노동부</u>
제공 목적	선정제한 사유 확인, 우수사업주 선정 승인, 증명서 발급 및 재교부
제공 항목	①대표자 성명, 연령, 성별, 직위, ②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③신청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명, 사업지등록번호, 사업체 소재지, 사업체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u>5년</u>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를 할 수 없어 선정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소속 근로자 개인정보에 관한 확인

신청 사업주는 신청서, 주요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임금대장 등)에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성명, 임금 등) 또는 민감정보(장애여부·정도 등)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제출 목적을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증빙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범위(장애인 근로자 관련 부분)로 한정하고, 그 외 근로자의 정보는 가린(마스킹) 상태로 제출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사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사업주용)

본인은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작성에 성실히 임했으며, 거짓 응답 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회사(기관)명			
작성일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작성요령]

1. 지표의 구축 및 실행여부에 해당되는 사항(①예 · ②아니오 · ③해당사항 없음) ☒ 표시
2. "①예" 또는 "③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했으나 현장 실사 시 "②아니오"로 판정될 경우 장애진화도 감점

진 단 항 목		지표의 구축 및 실행 여부	해당사항 예 아니오 없음
기초진단 (5문항)			
A. 장애친화경영을 위한 기초활동 (5문항)			
1	우리 회사는 장애친화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장애인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한 기업환경 구축, 장애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및 관행의 개선	①	② ③
2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장애인직원의 채용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또는 규정이 있다.	①	② ③
3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위한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4	우리 회사(기관)는 법정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였다.(최근 12월말 기준)	①	② ③
5	우리 회사(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최근 12월말 기준)	①	② ③
핵심진단 (33문항)			
B. 장애친화경영 실천의지 (4문항)			
6	우리 회사(기관)에는 장애친화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부서가 있다.	①	② ③
7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친화경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 및 성과를 사내에 공유하고 있다. (예) CEO speech, 사내 방송, 인터넷 게시물, 각종 업무보고 등	①	② ③
8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친화경영 성과 및 개선사항을 경영진이 확인하고 있다. (예) 경영정보시스템, 성과관리보고서, 경영진 결재 등	①	② ③
9	우리 회사(기관)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C. 모집 및 채용 (10문항)			
10	우리 회사(기관)는 인력채용계획에 장애인 채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② ③
11	우리 회사(기관)는 중증·여성·고령·발달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12	우리 회사(기관)는 입사 지원, 평가 및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단계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①	② ③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예1) 언어 및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면접이나 구두시험을 서면시험으로 대체 (예2) 시각/학습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손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태이프레코더, 구두 및 컴퓨터를 활용한 답변 허용 (예3) 기타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시험시간 조정 등		
13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거나 입사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14	(예) 장애인단체 교류 확대, 언론매체 홍보, 관련기관과 협약체결 등	① ② ③	
15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있다.	① ② ③	
16	우리 회사(기관)는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에 채용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17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에 있다.	① ② ③	
18	우리 회사(기관)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19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모집 및 채용방식을 개선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20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모집 및 채용방식을 개선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D. 고용유지 (10문항)			
20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근속연수를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 평균 근속연수 파악 및 비장애인 직원의 근속연수와 비교 실시	① ② ③	
21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직무배치 및 인사관리에 관한 근거 또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22	(예) 장애특성을 감안한 직무배치, 직원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편 시 조치 마련 및 직무 변경 등	① ② ③	
23	우리 회사(기관)의 근무평정 또는 승진심사 규정에는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	① ② ③	
24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고충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상담 창구 또는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25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따돌림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26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복리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27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28	우리 회사(기관)는 교육훈련 시 장애인 직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29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배치전환·승진·전보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30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근로환경이 적절하지 파악해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E.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2문항)			
30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31	우리 회사(기관)는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직원에게 적합한 옵션을 설정하여 장애인 직원이 업무를 보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소프트웨어(SW) 또는 하드웨어(HW)를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다. (예1) 시각장애: 스크린 리더(컴퓨터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기, 문서인식 s/w, 점자프린터, 문자-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및 기구, 점자 변환 장비 (예2) 청각장애: 음성-문자 변환앱(소보로, 셰어투 등), 문자로 입력한 내용을 소리로 읽어주는 기구 및 s/w, 생산시설의 위험상황의 사이렌 등의 일반적 소리 정보를 시각 및 진동 등의 다른 오감 정보로 변환	① ② ③	
F.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3문항)			

32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 계획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①	②	③
33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①	②	③
34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고객 및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시킨 사례가 있다. (예)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문턱없애기, 자동문설치, 계단연속손잡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 및 개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등	①	②	③
G. 이해관계자 (4문항)				
35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가 있는 고객(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이 제품과 서비스를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또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예) 점자청구서, 제품에 대한 음성정보 제공, 수어통역사 지원에 대한 규정	①	②	③
36	우리 회사(기관)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객 응대 및 요구사항 처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37	우리 회사(기관)는 공급자/협력업체(기관)가 우리 회사(기관)의 장애 관련 의무 이행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①	②	③
38	우리 회사(기관)는 공급자/협력업체(기관)가 장애인(직원, 고객 또는 방문객 모두 포함)을 위한 장애인화성 조치를 실시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붙임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목록

기관명	대표전화	주소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북부지사	02-6312-53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부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동부지사	031-600-0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서부지사	031-500-24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인천지사	032-242-1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인천광역시

기관명	대표전화	주소	관할지역
울산지사	052-226-1004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31, 10층(달동)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강원지사	033-737-66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강원특별자치도
충북지사	043-230-6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청북도
충남지사	041-629-6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제외)
전북지사	063-240-24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지사	061-983-180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전라남도(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제외)
경북지사	054-450-30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구 산하) 제외 제외)
경남동부지사	055-225-800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김해시)
경남서부지사	055-922-19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층(칠암동)	경상남도(진주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제주지사	064-710-5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